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98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김선민 · 김준형 · 서왕진
서미화 · 김 윤 · 이수진
김재원 · 남인순 · 이주희
박은정 · 황운하 · 신장식
의원(12인)

제안이유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특정 취약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립·은둔, 중장년 1인가구의 관계 단절, 노년기의 고립과 고립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나고 있음. 소득·주거·고용의 불안정, 질병·장애, 돌봄 공백,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누구나 사회적 고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

현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고립의 발생·심화를 예방하고,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과 연계하며,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조정체계, 실태조사, 고립위험자 발굴·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 지역 사회 기반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사회적 고립, 고립사, 고립위험자, 사회적 연결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다.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연결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책이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사회적 고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결사회 정

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앙 및 지역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연결 거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지원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연결 강화 사업 및 재고립 방지 조치를 실시
하며, 고립사 발생 시 필요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
조부터 제17조까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및 고립사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이란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나 돌봄이 필요한 때에 사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2. “고립사”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질병·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립위험자”란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연결”이란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5. “사회적 연결 교육”이란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립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을 말한다.

6. “연결사회”란 개인 간 상호작용이 그 빈도·지속성·기능 및 질적 측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연결이 공고한 사회를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거나 고립사 위험에 노출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정책에 협력하고, 고립위험자를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립위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국민이 스스

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위험자의 발굴, 조기 대응, 재고립 방지 및 고립사 발생 시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상시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하여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결사회위원회) ① 사회적 고립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연결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사회적 고립, 복지, 정신건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⑤ 제2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립위험자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연결 교육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무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결사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연결사회보고서의 작성·보고·제출 및 제4항에 따른 개선·보완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추진 기반

제9조(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연령별·지역별·가구형태별 사회적 고립 현황
2.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의 원인 및 특성
3. 고립위험자 및 고립사 현황
4. 사회적 고립 상태인 사람 또는 고립위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욕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사항 중 고립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 연결 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연결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결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에 필요한 기술적·행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결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연결영향평가 실시 현황 및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연결영향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그 결과의 통보, 의견 제시 또는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결사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결사회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

신에 관한 정보

6.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에 필요

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
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고 개인정보가 유
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조
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 연결 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전문성,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결영향평가의 평가 지표 개발·보급 지원
2. 사회적 고립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사회적 연결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연결강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전문성,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제16조에 따른 사회적 연결 강화 사업의 기획·수행
2. 고립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3. 제14조에 따른 사회적 연결 거점의 운영·지원

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회적 연결 거점의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간 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사회적 연결 거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적 연결 거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교류 및 공동체 활동 지원
2. 고립위험자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3.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업

③ 사회적 연결 거점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고립위험자 발굴 및 사회적 연결 강화 등

제15조(고립위험자의 발굴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 위험자 발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고립 위험 징후의 조기 발견
2.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안부 확인 및 고립 징후 감지 시스템 운영

3. 고립위험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고립위험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립위험자 발굴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 수행 중 고립위험자를 발견하거나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립위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에게 고립위험자의 거주지에 출입하여 고립위험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위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상담, 의료, 복지 등의 지원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의 연계

3.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공동체 활동 참여 지원

4.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사회적 연결 강화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의 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연결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고립의 정도와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립사 사후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사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통지, 유품 정리 및 장례의 지원 등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연결 전문인

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이 법에 따라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20조(벌칙) ①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연결사회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

회 위원의 임기는 연결사회위원회가 구성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3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에 따른 최초의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실시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